

2023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안내문

2023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안내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대상업체 :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
2. 제출기간 : 2022. 4. 3(월) ~ 4. 17(월)
3. 문 의 처 :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(회원사 포함)
4. 신고방법 : 온라인 신고(서류제출 불필요)
5. 제출서류
 - 가. 필 수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(전년도, 전전년도)
 - 나. 기타 서류 :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가점관련 서류,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
 -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건설사업자로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가족친화인증서 사본
 -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로 각 현장별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 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,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법인등기부등본 등)와 전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기 및 금액이 기재된 서류,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, 동법 제 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로 전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전년도에 제공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유의사항

-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는 온라인 신고로 진행되며 우편 또는 방문서류 제출 불필요
- 종합 및 전문건설업 동시 보유시 시공능력평가액이 큰 업종으로 가산되며, 우리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
 - ※ 우리협회에 신고하였으나 전문건설업에 가산되는 경우 해당자료를 전문건설협회로 송부
- 작년에 미신고업체도 2개년도(2022년, 2021년) 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내역’ 제출시 올해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가능
- 가점항목이 2개 이상 해당되더라도 중복가점 불가능
- 현장별 편의시설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, 해당업체의 모든 2022년도 신규계약 공사현장(1억원 이상)에 화장실, 식당, 탈의실을 각각 전부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가점이 가능하므로 유의